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18년 07월 05일

다산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오**	오** 1980-02-28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9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8-07-05